

2013년도 전반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후보자격신청 및 인증신청 안내

2013년 전반기 인증후보자격 신청 및 인증신청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2013년 인증후보자격신청 및 인증신청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 (www.kaab.or.kr) “인증사업”의 “인증양식”에서 2013년도 전반기 인증후보자격신청 및 인증신청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반드시 해당 대학교 총장 명의로 건인원 사무국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심사를 위해 매년 해당양식이 보완되고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증후보자격 심사는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인증 심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지만 보다 간략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인증후보자격을 갖춘 프로그램만이 인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후보자격을 획득하였다라는 것은 단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증이 갖는 효과와는 무관합니다. 인증후보자격 신청 시기는 프로그램 개시 후 학부의 경우 최소 3년, 대학원의 경우 최소 2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후보자격 취득 이후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접수된 인증후보자격신청 심사 및 인증신청 심사는 건인원 심사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하는 프로그램은 해당 양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심사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인원 홈페이지(www.kaab.or.kr) “인증사업”의 “인증비용” 및 “인증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인증프로그램으로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신청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류 및 심사료는 제외됩니다.
5. 입금된 심사료는 일체 환불 또는 이월이 불가능하오니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www.kaab.or.kr)의 Q&A 또는 건인원 사무국(02-521-1930, 19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